

공동주택(아파트등) 세대점검은 이렇게 실시하세요!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기한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인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해야 합니다.



1. 점검대상 및 시기

- ☑ 대상: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 시기: 아파트별로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 완료

예) 2017년 6월 30일 사용승인, 종합점검 대상 A아파트

시기	종류	점검비율(계획)	시기	종류	점검비율(계획)
① '23년 6월	종합점검	30% 이상	② '23년 12월	작동점검	30% 이상
③ '24년 6월	종합점검	30% 이상	④ '24년 12월	작동점검	잔여 세대

2. 세대점검 실시절차

- ☑ 소방시설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1) 계획수립

2) 사전공지

3) 사전파악

4) 용역계약

5) 점검실시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실시

점검업체 실시

2주년 주기로
점검계획 수립

관리자는
관련 사항을
수시로 공지

점검실시 전
점검 가능세대
사전 파악 실시

사전 파악된
점검 세대의
용역계약 체결

세대+공공부
점검 실시
(개방된 세대)

- ☑ 입주인이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 점검: ① 입주인 등 '소방시설외관점검표' 수령(관리사무소) ⇒ ② 점검 및 작성 ⇒ ③ 관리사무소에 제출
- 보관: ①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점검자 작성) 및 ②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관리자 작성) 2년간 보관



▲ 점검 동영상

3. 점검해야 할 세대내 소방시설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법령자료실 내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